

파주시지역수해복구에관한건의안

의안 번호	381
----------	-----

발의년월일 : 1998년 8월 13일

발 의 자 : 류한철의원외 2인

1. 주 문

'98년 8월 5일부터 발생한 파주시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완비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다음사항을 건의함.

- 가.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대책 및 복구추진
- 나.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 다.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액의 현실화
- 라.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부담
- 마. 군부대유실 폭발물의 조속하고 완전한 제거
- 바. 특별교부세등 수해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세부내역 : 별지 1.

2. 제안이유

가. 이상기후에 따른 개털리성 폭우로 '98. 8. 5일과 8. 6일 이틀에 걸쳐 파주시
전역에 평균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 인명피해 45명, 이재민발생
5,729세대 17,232명, 건물 파손 및 침수 6,399동, 농경지 유실 및 침수
6,428ha, 공공시설 파손 542개소 등 이막이마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하였음.

나. 파주시는 '96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 수재로 시민모두가 커다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급변 수해를 당하게 되어 수재민은 물론 시민모두가
히탈감과 좌절감에 빠저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임.

다. 공무원과 시민·군부대·자원봉사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재민의 구호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수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아픔을 달래고 또 다른 수재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한 실정임.

라. 조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재해지역의 선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정부의 이재민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이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또한 취약한 우리시 재정으로는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며, 더하여 군부대 유실폐발물로 인해 복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제2의 재난까지도 우려되고 있음.

마. 따라서 이와 같이 미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수재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기하고자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나. 기타자료

- '98피해조사및재해복구계획수립관련규정집-중앙재해대책본부
- '98아재민구호미지원기준-보건복지부
- 파주시수해피해상황(별지 2)

수해복구관련세부건의사항

1.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대책 및 복구추진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3.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액의 현실화
4.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부담
5. 군부대 유실 폭발물의 조속하고 완전한 제거
6. 특별교부세등 수해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항구적이고 완벽한 수해대책 및 복구 추진

○우리시는 지난 '96년에도 문산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해를 당하여
·서민모두가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바 있으며,
그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수해를 당하
있는 바

○급진 수해는 '98. 8. 5~8. 6 이틀에 걸쳐 파주시 전지역에 평균500mm가
넘는 집중폭우가 쏟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시 전역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음.

○이러한 가운데서도 '96수해당시 최대 피해지역인 문산지역의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은 완벽한 복구와 효과적인 수해방지대책 추진의 결과로
사료됨.

○따라서 급진 수해에 대한 완벽한 복구는 물론 시 전역을 총망라한
전반적이고 완벽한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재난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구호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의 경우에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이와같은 내용이 없이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자연재해의 경우에도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일 때에는 “특별재해구역”을 선포하여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액의 현실화

○정부의 재해복구지원기준에 주택의 경우, 전파시에는 2,000만원, 반파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액이 현실적인 주택복구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준액중 70%가 용자 및 자부담으로 실제 무상지원액은 30%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해로 모든 것을 잃은 수재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주택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지원기준액 및 무상지원비율의 상향조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또한 주택침수의 경우, 완전침수시에는 75만원, 일부침수시에는 45만원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침수시 주택뿐만 아니라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의 생필품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낮으며, 완전침수와 일부침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분이 용이치 아니하고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침수주택에 대한 지원기준을 단일화·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그리고 금번 수해의 경우 피해주택의 대부분이 상가로서 진열·지장된 상품의 피해가 주택피해액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 기준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바 상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중 경작규모가 2ha미만의 농가에 한해서만 생계지원·중고생 학자금면제·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농지개량 조합비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바 전반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경작규모 2ha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도 학자금면제·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농지개량 조합비감면 등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의 제해복구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수해복구비의 전액 국고부담

○제해구호및제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제해구호 및 제해복구비용 등의 상당부분을 지방비로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IMF구제금융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금번 수해로 인한 자치단체의 세입감소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금번 수해복구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줄 것을 건의함.

□ 군부대 유실 폭발물의 조속하고 완전한 제거

○금번 수해로 인해 군부대에서 설치·보관중이던 지뢰, 포탄등 폭발물의 상당량이 유실되어 우리시 관내 하천 및 농경지 등에 광범위하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안전한 수해복구작업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유실 폭발물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제거하여 줄 것을 건의함.

□ 특별교부세등 수해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우리시의 세입이 감소하여 긴축제정을 피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수해로 인한 지방세 및 국세의 감면조치등으로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어 수해복구사업은 물론 당초 계획되었던 주민 숙원사업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금번 수해로 피해가 심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 등의 정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을 하여줄 것을 건의함.

파주시수해피해상황

< 강우량 ('98. 8. 5~8. 6) >

○ 평균 강우량 : 506mm

○ 최대 강우량 : 582mm (월릉면)

○ 최고 시우량 : 111mm (금촌동, 8. 6. 02:00~03:00)

※ '98. 8. 5(수) 18:00 이후 강우량 누계 : 711mm

○ 인명피해 : 45명(사망 35, 실종 10)

○ 이재민 : 5,729세대/17,232명

○ 건축물 : 6,399동(유실 27, 진파 112, 반파 165, 침수 6,095)

○ 농경지 : 6,428.8ha(전체 9979ha중 64.4%)

· 침관수 : 5,800.5ha · 유실·매몰 : 605ha · 기타 : 23.3ha

○ 공공시설물

· 도로 : 98개소/19,877m · 하천 : 56개소/34,985m

· 교량 : 30개소(소교량 29) · 수도 : 31개소

· 학교 : 11개소 37교실 · 철도 : 1개소/150m

· 수리시설 : 58개소 · 산사태 : 257개소/68.1ha

제출처 : 대통령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부장관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국회의장

새정치국민회의 대표

새정치국민회의 파주시지구당위원장

자민련 대표

자민련 파주시지구당위원장

한나라당 대표

한나라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국민신당 대표

국민신당 파주시지구당위원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파주시장